다산학 46호 (2025.6) | 187~222

만민 교육의 공간, 향수鄕遂
— 다산 정약용의 향례鄕禮 기획

김지영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다산의 경전 해석과 만민 교육론
3. 『목민심서』의 향례 개편과 향약례 제안
4. 맺음말

1. 머리말 *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향례 기획을 '만민 교육' 의제와 연관시켜 이해해보려 시도한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대에서 순조대에 걸쳐 학문하고 실천했던 대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경세 기획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조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새로운 경세론을 써나갔다. 필자는 개혁군주 정조의 예제 개혁을 가례-향례-학교례-국가례-천하례라는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며, 정조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견해를 제시해 둔 다산의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론 정조와 다산의 입장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다산의 대학 해석이나 교육론 등에서 주자학과 다르다고 알려져 있기에, 주자학 특유의 교육론 위에서 전개된 정조의 향례론과 다산 향례론의 차이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른바 주자학의 경세 기획은 학學, 배움의 내용과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기반하였으며, 모든 대인大人의 배움을 설명한 『대학』은 사서四書 중에서도 핵심적 지위를 갖고 있다.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라는 『대학』 삼강령과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팔조목 해석을 통해 사서인士庶人=범민凡民 교육과 선정善政이라는 과제를 연결시켰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천하를 바꾸고 삼대를 회복할 수 있다(復古)는 믿음 위에서 거대한 교육 프로그램, 예교禮敎 프로그램을 중심에 둔 예치禮治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다.[1] 건국 이래 조선의 모든 제도(예제)들은 이 예교 문제의식과 연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82625).

동되어 있다. 정조의 조선 예제 변통론도 이런 주자학 경세 기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주자학으로 이끌어 온 조선이 당면한 현실에 정조도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주자학이 문제가 아니라 주자학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잃어버린 채 고식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 하는 당시 기풍이 문제라는 것이 정조의 입장이었다.[2)]

타인과의 공존적 조화를 배우는 첫 장소가 가정(家)이라면, 지역 사회(鄕, 鄕黨)는 그것을 더 넓혀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들과의 삶을 꾸려나가는 장소였다. 혈연관계 속 타자와의 조화를 배우고 체화시키는 것이 가례家禮의 역할이라면, 더 넓은 범위에서 익숙하게 타인들과 만나 다투지 않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례鄕禮의 역할이었다. 치세 후반기에 풍속을 바꾸는 예교 정치를 추진하며, 골육骨肉까지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 풍조를 바꿔 나가고자 했던 정조 역시 향례에 관심을 두었다. (밖으로) 나가서 곤궁한 처지의 약자에 손 내밀고 돌볼 수 있는 자는 집안에서 노인과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나가서 타인을 존중하고 우애 있게 하는 자는 집 안에서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낸다는 것이다.[3)] 향례는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연대와 존중, 우애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의 제도였다. 또 누구나 반목과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이런 교육은 '만민 교육'이어야 했다.

---

1) 주자학(신유학)이 흥기되었던 시대의 삼대를 회복하려는 열망과 가족-사회 프로그램으로부터 삼대 회복 방법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조.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역,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피터볼, 심의용 역, 『중국 지식인들의 정체성-사문을 통해 본 당송시대 지성사의 대변화』, 북스토리, 2008; 피터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위잉스, 이원석 역, 『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2)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15~47쪽.

3) 김지영, 위의 책, 125~134쪽.

정조는 향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정조가 죽고 십수 년이 지난 후 다산은 목민관의 할 일을 자세히 제시한 『목민심서』를 내놓았다. 이 책에는 정조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다산의 답변이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했다. 글의 순서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구한 과정을 그대로 따랐다. 다산이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자학 경세론에 대한 다산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때문에 첫 번째로 다산의 『대학』 해석을 검토할 것이다. 기왕에 다산 교육론 보수화의 증거로 여겨져 온 '태학太學-주자胄子 교육론'과 '친민설親民說'의 경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해볼 것이다. 둘째, 범민凡民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지역에서의 교육론을 검토하기 위해 다산의 향수론鄕遂論을 검토하고, 배움의 기회를 갖기 힘든 농맹 교육에 대한 다산의 견해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정조가 『향례합편』에서 제안한 향례, 향음주례와 향약을 중심으로 한 만민 교육 의제를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수용한 방식과 그 의미를 알아보려 한다.

2. 다산의 경전 해석과 만민교육론

1) 새로운 『대학』 해석과 '교육입국론'

다산의 저작 중에는 20대 때의 저작인 『대학강의大學講義』과 53세 강진 유배시절 완성한 『대학공의大學公議』가 있다. 『대학강의』는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에서 이루어진 초계문신 강의 때의 문답을 기록한 후 약간의 수정된 견해를 부기한 저술로, 『대학』을 보는 다산만의 견해가 드러

나 있지는 않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791년, 초계문신이었던 다산은 매달 제출하는 과제로 내놓은 글에서 『대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선보였다.[4] 강진 유배지에서, 젊은 시절의 이 창견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전거를 보완해서 완성한 글이 『대학공의』이다. 이 저술은 주자의 『대학』 해석과 다른 면모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다산의 정치사상을 독해할 수 있는 필수 자료로 주목되어 왔다.[5]

주자는 『대학』을 '대인大人, 즉 성인成人이 된 모든 사람을 위한 배움(학)'을 제시한 책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다산은 국학인 태학太學의 교육을 담은 책이라 주장한다.[6] 태학의 교육 대상도 천자의 여러 아들과 왕·공·대부의 주자胄子, 즉 세습해서 가家(門), 방국邦國, 천하天下를 통어하는 정치가(治者)가 될 자였음을 강조했다. 옛 경전에서 '대인大人'의 용례, 『주례』에서 국인國人과 주자胄子를 나누어 가르쳤던 제도를 근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대학』 경문에도 '만민을 가르친다'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태학의 길은 일반 사민士民의 배움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요즘은 가족 혈통에 귀천이 없으므로 이 경문을 참조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7]

---

4) 이때의 일은 『대학공의』 안에 소개되어 있다. 내용은 ①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정조에 의해 1등 답안으로 뽑혔다. ② 주자 해석과 다른 것을 염려한 채제공이 등수를 바꾸어 2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자료는 노론 측의 남인에 대한 공격이 염려되는 엄중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남인 학자 다산의 『대학』 해석이 정조에 의해 인정받았다는 맥락에서 인용되어 왔다.

5) 김선경, 「다산 정약용의 정치철학; 『대학공의』 읽기」, 『한국사상사학』 26, 2006.

6) 『大學公義』 1, 大學之道(『정본』 제6책, 69쪽). "大學者, 國學也, 居胄子以敎之. 大學之道, 敎胄子之道也."

7) 『주례』 지관에서도 師氏가 三德으로 國子를 교육하고, 대사도가 鄕三物로써 萬民을 교육한다고 해서 國子와 萬民을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았다고 본다. 다산은 이 두 가지의 배움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여덟 팔 자(八)가 갈라진 것에 비유해 명시했다.(『大學公義』 1, 大學之道(『정본』 제6책, 69쪽). "鏞案 彼云'敎國子', 此云'敎萬民', 八字打開, 分爲二類, 則經云'大學之道', 是敎胄子之道, 與士萬民不同也. 今世之法, 族無貴賤, 咸於此經致

다산이 지적했듯 주자학은 『대학』 공부를 '천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학'으로 만들고자 했다.[8] 이론상으로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명덕明德을 밝히고 옛 군사君師의 도를 이으면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 더 많은 이들이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밝히는 일(明明德)을 도울 가족-사회프로그램(家禮와 鄕禮)의 개발과 실천은 신유학 경세론의 주요 관심사였다.[10] 사 혹은 사/민=凡民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 공간도 확대될 수 있었다. 『대학』을 '천하 통용의 학'으로 만들고자 했던 주자 주장의 의미, 이에 토대해 발전해 온 신유학 경세론을 알게 되면, 다산의 위와 같은 '대학=태학'론은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 한 대목의 해석으로 다산이 보수적 교육론으로 회귀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학 삼강령 중 친민親民의 해석을 보자. 명명덕明明德을 효·제·자라는 인륜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명덕론, 도덕본성론을 조정한 성기호설性嗜好說 등과 함께 주목받은 다산의 『대학』 해석은 대학 3강령의 '신민新民'을 '친민親民'으로 다시 바꾼 것이다.[11] 다산의 '친민'은 서로 불친不親한 민을 친親하게 만드는 것이다.[12] '신新'이 타인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의의에 집중한 것이라면, 친민의 '친親'은 가르쳐 변화시킨

力焉, 可也.")

8) 『大學公義』 1, 大學之道(『정본』 제6책, 69쪽). "朱子於此 遂改書名曰大學 讀之如字 訓之曰大人之學 與童子之學 大小相對 以爲天下人之通學."

9) 『大學章句』,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 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 以復其初."

10) 고지마 쓰요시,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241~251쪽; 피터 볼,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113~130쪽

11) 정약용은 주희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것에 반대했지만, 정약용의 '친민'에는 소민을 '친'하는 뜻 외에도 백성들끼리 서로 친애하도록 만드는 뜻, 군주가 추진하는 교화(化民)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차이진펑, 「정약용의 『대학』 해석과 사서학 구조」, 『다산의 사서학』, 김중섭·김호 역, 너머북스, 2014, 325~327쪽)

12) 『大學公義』 1, 在親民(『정본』 제6책, 84쪽). "舜命契曰 百姓不親 汝敷五敎."

결과에 집중한다. 백성이 친하다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목睦과 순順, 화목하고 잘 따르는 것이다.[13] 그런데 다산은 '신민新民'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효경孝經』에서 공자가 한 말, "백성에게 친애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효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백성에게 예법을 따를 것을 가르치려면 우애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敎民親愛, 莫先於孝, 敎民禮順, 莫先於弟.)라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가르쳐서' 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반명盤銘」·「강고康誥」·「주아周雅」의 글에서 친하게 하는 것이 곧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민'이라 한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한 다산의 결론 역시 양자의 주장(兩義:'신'과 '친') 중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되며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14]

태학을 정치가가 될 사람(胄子)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론으로 제한한 '태학설'과 위의 '친민설'을 결합시켜보면, 다산이 왜 이렇게 해석을 바꾸었는지 또렷하게 이해된다. 다산 주장의 핵심은 고대의 태학에서는 예비 정치가들에게 '서로 친목하지 않는 백성을 가르쳐서 친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에 있다. 즉 왕공대부의 정치 공간, 천하-방국-가문이라는 정치 공간에서 이를 이끄는 정치가의 주요 책무가 만민에게 친애親愛와 예순禮順을 가르쳐 사랑하고, 공경하고, 서로 돌보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15]

---

13) 『大學公義』 1, 在親民(『정본』 제6책, 84쪽). "民睦·民順者 民親也."

14) 『大學公義』 1, 在親民(『정본』 제6책, 84쪽). "兩義(정자의 '신민'과 왕양명의 '친민')不可偏廢 今幷陳之 以俟知者.

15) 차이진펑 교수는 정약용은 '성의'를 실천적 연결고리로 삼아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스스로 도덕주체로 거듭나고, 예악형정으로 가르쳐 '상호주체성'이 발휘되는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고 보았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덕주체로 거듭날 자연적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각이 그 주체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악형정의 '교'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산이 일본 고학파와 같이 예악형정과 육경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다산은 민을 '우민'으로 보고 예악형정을 통한 위정자의 통치를 통해서만 선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고학파와 달랐으며, 모든 사람의 주체성과 상호주체성 위에

이와 같은 다산의 주장은 『대학공의大學公議』가 이루어지기 20여 년 전 내놓았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대학공의』를 저술하며 1791년 초계문신 월과月課 답안으로 제출했던 일을 소개했다. 다산은 신진 학자 시절 이미 『대학』이라는 책의 실용이 '천하에 효도, 우애, 자애를 깨우치는 것'에 있다고 요약했다. 『대학』 경 1장에서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라고 했으므로, 명명덕의 참다운 목적은 효도를 일깨우고, 우애를 일깨우고, 고아를 돌보며 서로 배반하지 않도록 만민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16] 『대학』이 수신서가 아닌 치국평천하의 방법을 담은 책이며, 치국평천하의 주된 방법 역시 '교민敎民 정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17]

다산의 경세론을 담은 『경세유표』나 『목민심서』는 교민 정책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경세유표』에서는 지관地官 호조戶曹를 교관敎官으로 명명하였고, 주나라 대사도가 했던 만민 교육의 역할을 총괄 담당하도록 했다.

> 옛날 대사도의 직무는 오로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했으니, 소위 향삼물鄕三物로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후세의 호부戶部는 오로지 재부財賦를 전장하며 취렴하는 것을 직무로 삼을 뿐

서 선정에 이르는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자학의 문제의식을 한단계 발전시킨 포스트 주자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차이진펑, 앞의 책, 367~373쪽.)

16) 『大學公義』 1, 在明明德(『정본』 제6책, 78). "[記事] 大學之實用 不外乎孝弟慈三者. 今欲明大學之要旨 必先將孝弟慈三字 疏滌表章 然後一篇之全體大用 乃可昭也. 經曰明明德於天下 則明明德歸趣 必在乎平天下一節矣 興孝興弟之法 恤孤不倍之化 其果非明明德之眞面目乎."

17) 주자학의 본래 주장은 치국평천하 대신 修身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明明德을 이루어 줄 修身과 齊家에 대한 관심을 治國平天下의 要道이자 急務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직무에는 한 사람도 없다.[18]

옛날의 교인지법에 (중략) 만민萬民은 향학鄕學에서 가르쳐 대사도大司徒가 주관했다. (중략) (지금 태학에도) 비천당丕闡堂은 만민을 위한 학교로 삼고, 따로 양무를 설립해서 진사가 거처하도록 해야 한다.[19]

이렇게 볼 때 다산은 태학-주자교육론, 친민설 등을 주장해 『대학』에 대한 주자학의 해석을 일부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주자학의 만민교육론을 부정하려던 것이기 보다는, 치국평천하를 위해 국가·정부 주도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것이었다.[20] 적극적 교육 정책을 통해 무너져가는 조선을 '아래로부터'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른바 '교육입국론'을 염두에 둔 밑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향수론鄕遂論과 만민 교육론

한편, 다산의 교화론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되어 온 것은 육향론六鄕

18) 『經世遺表』 卷1, 地官 戶曹, 敎官之屬(『정본』 제24책, 51쪽). "臣又按 古者 大司徒之職 專掌敎人 所謂鄕三物 敎萬民也. 後世 戶部專掌財賦 唯以聚斂爲職事. 於是百官星羅 而敎人之職 無一人焉. 於是倫常斁絶 風俗壞敗. 後世之治 雖漢文帝 唐太宗 終不能得三古之髣髴者 凡以是也. 周禮鄕老 鄕大夫·州長·黨正·族師之等 皆敎人之官也. 今擬六部·六學專以敎人爲職 不唯詞訟是聽也. 故都事 改之曰敎官."

19) 『經世遺表』 卷1, 春官 禮曹, 國子監(『정본』 제24책, 83쪽). "古者 敎人之法 原有二路 其國子則敎之於太學 而大司樂主之 其萬民則敎之於鄕學 而太司徒主之. (중략) 以丕闡堂 爲萬民之學 別起兩廡 以處進士 若世子入學 不敢混入於序齒之列 以存鄕學之舊法 恐合事宜."

20) 다산은 "質로 돌아가려면 먼저 文을 닦으라."라며 '修文'을 강조했는데, 이 수문에는 예악제도의 수립 이외에 교화의 역할이 있었다.(차이진펑, 앞의 책, 233~237쪽)

論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례』의 교민의 법은 육향에서 그치며, 육향의 바깥에서는 교민한다는 설이 없다."(周禮敎民之法, 止於六鄕, 而六鄕之外, 絶無敎民之說.)라는 다산의 해석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왔다.[21] 다산의 『대학』 해석이 주자胄子 교육론으로, 교육 대상을 제한한 것처럼 이해되었듯이, 다산이 독특하게 전개한 육향-육수六隧론도 사민士民 중 사士 교육론이며, 교육 대상에서 농민(農甿)을 제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22] 다산은 과연 교육 대상에서 농맹을 제외했는가.

다산은 육향을 국도 즉 서울에 속한 것으로 보았는데, 주대에는 거주법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 사들과 상인, 장인이 서울에 거주했을 뿐, 서울 주민에 농민이 없었다고 했다.[23] 또 수隧를 교외의 농민(甿)들이 사는 곳이라고 보면서, 주대에는 수 지역에서 교법이 없다고 보았다. 『경세유표』에서 국도를 총괄하는 한성부와 한성부 아래의 육부六部를 지관地官에 소속시킨 것이나, 육부에 있는 육학六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의 이름을 향대부鄕大夫라 명명한 것은 육향=국도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4]

그런데 다산은, '지금' 조선에서는 서울 근교 지역은 6부에 붙여(6遂), 6부와 6학을 통해 교육하고, 지방 군현은 주대의 제후국과 같으므로 육향의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고 보았다.[25] 즉 다산은 향수론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지역을 대사도의 교육 공간으로 설정했다고 볼

21) 김문식, 「정약용과 신작의 육향제 이해」, 『한국학보』 61, 1990;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향례 이해」, 『한국실학연구』 31, 2016; 백민정, 「주례 육향제 논의를 통해 본 다산의 경세적 구상 – 향삼물 향팔형의 교화정책을 중심으로」, 『다산학』 2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22) 山內弘一, 「경성 귀족으로서의 긍지」, 『다산학』 1호, 2000, 다산학술문화재단, 315~316쪽.

23) 『經世遺表』 卷13, 地官修制, 敎民之法(『정본』 제26책, 173~174쪽).

24) 육부의 책임자는 令 1인이고 그 아래 敎官 2인을 두었고, 육학에는 鄕大夫, 敎授, 訓導, 童蒙敎官을 두었다.(『經世遺表』 卷1, 地官 戶曹, 敎官之屬.)

25) 『經世遺表』 卷13, 地官修制, 敎民之法(『정본』 제26책, 175쪽).

수 있다.[26] 『대학공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사도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만민교육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향수제 논의에서 교법이 없다고 강조했던 '농맹農甿'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산의 『주례』 논의로 돌아가보자.

> 상庠·서序·학學·교校에는 전야의 농맹農甿이 섞여 있지 못하도록 하며 오직 농사에 힘쓰고 각자 일정한 살림이 있어서 간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이 선왕의 지극한 다스림이었다.[27]

> 농부만은 왕성 밖에 살면서 전지에서 농사지었는데, 농부에게 덕행과 도예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6수 이하는 가르치는 법이 없었다. 수인遂人 조목에서는, 야인을 다스리는 데에 낮은 등급의 세금으로 농민을 모으고, 농사지을 땅을 주어 농민을 편하게 하고, 혼인을 권해서 길들이고 토의土宜로써 가르친다고 했다. 또 수대부遂大夫 조에 따르면, 3년마다 대비하는데 관리를 거느리고 농민 중에서 가려서 공이 있는 자를 밝히며 지치자地治者로 위촉했다.[28]

---

26) 양난 이후 조선은 중종대 이래의 동몽학 전통, 즉 여항의 소민에 이르기까지 범민을 교육한다는 의제의 복구를 시도했다. 17세기 범민 이상에 대한 공교육 의제는 조정 관료, 산림 학자, 재야의 실학자, 목민관 등이 함께 고민했던 바였고(정순우, 「제3장 17세기 국가의 동몽교관 운영과 사학 정책」,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정만조, 「조선후기 향촌교학진흥론에 대한 검토」, 『조선후기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301~326쪽), 영조와 정조대 국가 교육 정책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김지영, 「영조대 만민 교육 이념의 실천과 동몽의례」, 『한국학연구』 74, 2024) 다산의 경세기획에서 범민 교육 의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도 이런 조선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7) 『經世遺表』 卷13, 地官修制, 敎民之法(『정본』 제26책, 173~174쪽).

28) 『經世遺表』 卷13, 地官修制, 敎民之法(『정본』 제26책, 173~174쪽).

위에서 다산은 글을 모르는 농부에게 덕행과 도예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덕행과 도예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한다. 수인遂人과 수대부遂大夫 조에 가르치고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는 조목이 있지만 '토의土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농부의 업에 따라 공적을 평가해서 좀 더 넓은 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다. 수 지역에서도 농민을 대상으로 3년마다 대비하여 현능을 뽑아 올리기를 육향과 같이 했다고 본 정현의 설을 부정하고, 농사짓기에서의 업적을 평가하여 백무의 땅을 농사짓는 사람(地治者)으로 위촉(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대의 인재 양성과 상향식 추천제도인 '빈흥속민지제賓興屬民之制'를 육향에서의 빈흥제도와 육수에서의 속민제도로 나누고, 후자를 우수 농민 추천제라 한 것이다.

『경세유표』 교민 수제의 위 대목들이 수 지역의 농맹 교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목민심서』에서는 농맹 교육을 말한다.

> 주나라 때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월과月課를 주고 때때로 살펴, 고공考功하듯이 그 덕행의 등급을 매기고, 최과催科하듯이 잘못을 규찰했다. (중략) 육향의 바깥에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문적文籍이 없다. 육수六遂는 근교에 있는데도 그 (교)법이 오직 토의土宜에 따라 백성을 가르쳐 농사를 일으키고 농민을 이롭게 하는 것뿐이다. 덕행과 도예를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농민은 농사일에 힘써야 하므로 월과月課를 주고 때로 익히게(時習)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①) 오직 『상서대전』에, "곰방메와 호미를 이미 간직하여 농사를 끝냈으니 학교(塾)에 가서 공부를 한

다."라고 하였고, 그 주석에, "동지로부터 45일이 되면 학교를 나가 농사일을 한다."라고 하였으나, 과연 당시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②)[29] (중략) 교계敎戒는 도를 배우는 선비들에게 하고, 소민들에게는 향리에서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 훈회하여 효제의 뜻으로 거듭 깨우쳐 주기를 맹자의 법과 같이 하고, 농사일하는 일 틈틈이 가르치기를 복생伏生의 설과 같이 할 따름이다.(③)

위 ①에서는 경전에서 농민에게 덕행과 도예를 가르치는 일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한다. 즉 덕행과 도예는 월과를 주고 성과를 평가해 엄격하게 익혀야 하는 것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 그럴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②에서 볼 수 있듯, 경전 상에도 농민이 농사를 마친 후 "농한기에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대목이 있고, 다시 농사철이 되면 농사일을 한다는 대목이 있다. 다산은 "과연 당시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상서대전』의 이 대목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③처럼 "교계敎戒는 도를 배우는 선비들에게 하고, 소민=농민들에게는 향리에서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 훈회하여 효제의 뜻으로 거듭 깨우쳐 주기를 맹자의 법과 같이 하고, 농사일하는 일 틈틈이 가르치기를 복생의 설과 같이 할 따름이다."라고 했다.[30] 복생의 설이란 ②에서 인용했던, 농사를 짓지 않을 때 학교에

29) 『牧民心書』 禮典, 敎民(『정본』 제28책, 228~232쪽). "凡在六鄕之外者 其敎無文. 六遂在近郊之內 而其法惟以土宜敎甿 興耡利甿而已. 德行道藝不復稱述 誠以農夫力田 不可月課而時習之也. 惟尙書大傳稱 耰鉏已藏 歲事已畢 塾有敎戒 距冬至四十五日 始出學傳農事."

30) 『牧民心書』 禮典, 敎民(『정본』 제28책, 228~232쪽). "其所以敎戒之者 宜在學道之士 其畎

가서 공부한다고 한 『상서대전』의 설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교계는 도를 배우는 선비들에게 한다."라는 대목을 선비들만 교육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선 안 된다. '교계'는 주나라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방법처럼 '가르친 후 매달 과제를 주고 때로 감독하여 그 덕행을 평가하듯 등급을 매기고, 그 허물과 악을 자세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즉 전업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며 엄격한 수련과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농민=소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하고 평가하여 상벌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다만 맹자나 복생이 말했듯, 농한기에만 훈회 즉 일러주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고 본 것이다.

『경세유표』의 「지관수제」에서도 육향(서울)과 육수(근교)에서의 교민법을 상세하게 논한 후, 농맹이 사는 군현의 교민법을 말했다. 육향과 육수에서 향·당·율·려의 제도에 따라 교육과 인재등용을 했듯이, 군현에서 골고루 교민하기 위한 제도를 세운다. 집의 크기와 관계없이 100가가 1취, 9취가 1방이 되며, 각 방마다 교장敎長 3명을 세우게 했다.[31] 각 교장은 학도 40명을 거느리고, 법을 읽고 학업을 가르친다. 또 군현에서는 「남전여씨향약」과 같은 것을 농한기에 강하고 가르치는데, 모두 향교에서 주관한다고 했다. 훗날 『목민심서』에서 펼쳐진, 소민小民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만민교육 제도 기획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결국 다산은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농맹을 포함한 만민을 모두 대사도의 교육 대상으로 보았고, 대사도의 위임을 받은 여러 직제의 관리

敢小民 自其鄕里 冬月訓誨 申之以孝悌之義 如孟子之法 敎之以鉏耰之隙 如伏生之說而已."

31) 『經世遺表』 卷13, 地官修制, 敎民之法(『정본』 제26책, 188쪽). "毋論屋宅之大小 每以百家爲一聚 九聚爲一坊. 然京城一坊 選士三十人 郡縣一坊 立敎長三人而已 不可與京城比例也. 其敎長三人 又未必盡爲選士 選士之數 視其文·武·藝業之華陋 不可以一坊三人爲恒率也. 彬彬之郡 一坊三人未爲多也 貿貿之縣 雖九坊三人未爲少也. 況郡縣之士 無藝選胥選 其額數之少 不足疑也."

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 대상인 만민은 전업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와 본업을 쉬는 때에 교육을 받는 농민으로 구분되었다. 농민들에게도 농사 기술 교육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도덕 주체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3. 『목민심서』의 향례 개편과 향약례 제안

1) 『향례합편』의 재해석과 향례 개편

경전이 증언하듯 대사도의 만민 교육은 향례鄕禮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다산은 태학론太學論, 친민설親民說, 향수론鄕遂論 등 다방면으로 고대의 정치와 교육방법을 논하며, 조선에서의 만민 교육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목민심서』에서는 "수령의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며 다시 교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2] 주대에 대사도의 만민 교육을 보여주는 예제인 향례는 다산에 의해 조선의 실상에 맞는 향례로 재편되어 『목민심서』 예전 교민에 수록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제안한, 백성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서로 친하게 되도록 교육하는 예제는 세 가지가 있다.[33] 노노老老로써 가르치는 양로례養老禮와 장장長長으로써 가르치는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휼고恤孤로써 가르치는 향고례饗孤禮이다. 이

32) 『牧民心書』 卷7, 禮典, 敎民(『정본』 제28책, 227쪽). "民牧之職 敎民而已."

33)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향례 이해」, 『한국실학연구』 31, 2016.

의례들은 조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개성부 및 주현양로연의」와 「향음주의」가 가례편에 수록되어 있다.[34] 지방관의 주도로 매년 수행되었던 이 의례는 18세기 후반에 어느덧 생소한 것이 되었다.

1797년 1월, 정조는 매해 반포하던 농정윤음을 대신해 「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을 반포했다. 백성들이 노인 봉양(養老)과 농사일에 더 힘쓰도록(務農) 하기 위해 소학과 오륜행실, 향음의식, 향약조례를 담은 책을 반포해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전국에 내린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에 내린 「대고大誥」에서 왕으로서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를 '민산民産' 문제로 설정했다. 만민 교육의 정치를 실효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 맹자의 종지를 이어 경계를 바로잡고 민산을 넉넉하게 하는 일을 첫째 과제로 삼은 것이다.[35] '민산'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격적인 '교민' 정책은 유보되었다. 그로부터 2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조는 이 '풍속 교정 윤음'을 반포하며 만민 교육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했던 것이다.

윤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만민 교육을 위해 정조는 4가지를 언급했는데, 실제 반행한 책은 3종이다.[36] 기존의 책을 그대로 펴내거나 재편집해 편찬한 『소학』, 『오륜행실도』와 달리 『향례합편』은 완전히 새롭

34) 15세기 국제에 향음주례와 양로연이 포함된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김지영, 「조선시대 국가향례의주의 예교론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김지영, 「경쟁하는 두 왕조 –조선 국왕의 개성 행차의례와 '문명지치'의 약속」, 『서울학연구』 136, 2020 120~126쪽) 조선시대 향례 논의와 실천을 상호 존중과 연대의 풍속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향촌 지식인들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최근 연구로 박사랑, 「조선시대 향례 논의와 실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참조.

35)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36~42쪽.

36) 『오륜행실도』 편간과 정조의 교속 정책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윤, 「1797년 『五倫行實圖』의 편찬과 正祖의 矯俗 정책」, 『규장각』 64, 2024 참조.

게 편찬되었다.[37] 1795년 6월 혜경궁의 회갑연을 치른 후에 백성들에게 효도를 권하고 사랑을 넓히기 위해 향음주례를 다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정과 마을에서 친애하는 풍속을 만들기 위해 향음주례라는 옛 예제를 떠올린 것이다. 재능과 덕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도 향음주례와 향약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정조는 「어정향음의식」 1책을 지어 내려주고, 교정을 보고 실행 의주를 덧붙여 간행하도록 했다. 책은 두 달 만에 완성해 전국에 배포했다.

정조는 당시의 모든 폐단이 '나이 든 이를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집안에서 내 노인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남의 노인을 외면하는 것 둘 모두를 말한다. 향음의식을 통해 백성을 교육하면 민간 풍속도 서서히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38] 나이 들어 궁한 처지에 있는 타인은 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미루어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타자와의 연대와 돌봄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사랑과 공경에 말미암고 미루어나가 나이 들고 궁핍한 자를 버려두지 않고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不遺老窮知貴老之義), 이것이 향음의식의 중요 의미였다.

본래 향음주례는 향당에서 인재를 추천해 올릴 때 행하는 '빈흥賓興'의 향음주례와 나이 든 이를 귀하게 여기는 '정치위正齒位'의 향음주례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뉘어지는데,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향음주의」는 후자 계통에 속한다.[39] 정조 역시 노인을 귀하게 여기는 '노노老老'의

37) 『향례합편』 출간 의도와 과정에 대해서는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125~134쪽 참조.

38) 『일성록』, 정조 21년 1월 1일(임인); 『鄕禮合編』 1冊,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39) 김지영, 「조선시대 국가 향례의주의 예교론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167~171쪽.

의미를 강조하며 윤음을 반포하고, 정치위의 향음주례가 담긴 『향례합편』을 간행 배포했던 것이다.[40]

정조가 『향례합편』을 반포하며 강조한 향음주례의 또 다른 의의는 단 하나의 의례에 많은 교육적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 하루에 예를 행하여서 사방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는 향음주례鄕飮酒禮가 근사할 것이다. 이 예는 노인을 쉬게 하고 농민을 위로하며 기쁨을 인도하고 나이를 구별지으며 귀천을 밝히고 높낮음을 분별하는 것이니, 몸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요지가 대부분 이를 통해서 일어난다.[41]

하루에 예를 행해서 '사방에 그 영향을 미치려면'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가르치려는 주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예가 구성되어야 했다. 당초에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향음주례 의주를 만들어 배포하려 했지만, 새 의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조선 의절로는 『국조오례의』 향례 의주만 수록되었다. 경전 및 중국·조선의 향음주례 의주들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의례를 실행하도록 했을 뿐이다. 정조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불확실하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더 연구하라는 과제가 주어졌기에, 다산 역시 그 작업에 동참했다.

향음주례를 강조했던 정조와 달리 다산은 '노노'의 예제로 양로례를

40) 『향례합편』은 한성부의 5부, 팔도 감영, 사도 유수영, 330개 주현과 주현 향교, 100곳의 서원에 배포되었다.(김지영, 앞의 책, 2020, 150~151쪽)

41) 『鄕禮合編』 1책,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들었다.[42] 『목민심서』에 수록된 양로례 의절은 『국조오례의』 수록 의주와 차이가 있다. 『국조오례의』의 양로연 의주도 국가의 만민 교육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기에, 수령이 주최자가 되고 사서인들이 참여한다. 지역의 유품 관인들을 위해 여러 노인들의 자리는 차등이 두어졌다. 관아 정청 안쪽에 수령이 있고, 관품이 있는 노인들은 마루 위에, 사서인 노인들은 마당에 앉았다.[43]

이와 달리 『목민심서』의 양로례는 수령과 노인이 함께 명륜당 마당에 자리잡고 예를 진행한다. 노인들은 수령의 동쪽에 남북으로 나누어 앉는데, 중하층 노인들이 남쪽에 앉았다. 노인을 귀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아 음악을 연주하며 음식과 술을 베풀며, 맞이하고 배웅하는 예를 배치한 것은 같다. 다산은 성호 이익의 말을 빌려 양로연이 '友愛의 의례'임을 강조했다. 효를 일으킨다고 했지만, 내용상은 우애(悌, 형제애, 박애)의 의례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 우애는 향당鄕黨과 도로道路와 군려軍旅, 즉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교유와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 공간에서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다.[44] 정조가 강조하고자 했던, 향례를 통한 사회 속 연대의식 고양이라는 의의는 다산 양로례에서 더욱 뚜렷하다.

『목민심서』「예전」의 향음주례에서 다산은 '노노老老' 대신 '장장長長'의 의의를 강조했다.[45] 장유의 차례에 따라 예양하는 의미가 위주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산의 향음주례는 노인을 함께 초빙해서 대접

---

42) 『牧民心書』 卷3, 愛民, 養老(『정본』 제27책, 210~212쪽).

43) 『國朝五禮儀』 卷4, 「開城府及州縣養老宴儀」.

44) 『牧民心書』 卷3, 愛民, 養老(『정본』 제27책, 208~209쪽). "星湖先生曰 有孝而不悌者 未有悌而不孝者. 故先王之制 悌達於鄕黨 悌達於道路 悌達於軍旅 其化根於國家之養老. 自有虞以來 未之或廢."

45) 『牧民心書』 卷7, 禮典, 興學(『정본』 제28책, 262쪽). "季秋行養老之禮 敎以老老 孟冬行鄕飮之禮 敎以長長."

하는 '노노'의 의식도 겸했다. 양로례에서처럼 참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음주례를 통해 백성을 가르쳤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서적徐積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향음주례도 여항의 노인들과 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례였다.

> 절효선생節孝先生 서적徐積이 초주楚州의 교수敎授가 되었을 적에, 세상이 오래 되어 향음주례를 볼 수 없는 것을 근심하여 군수를 거느리고 그 의식을 행하였다. 여항閭巷의 노인들을 모두 향음주례에 참여시키고, 또 글을 지어 젊은이들을 권유하였는데, 이때 학궁에 온 사민士民이 대개 1천 명이나 되었다.

> 조극선趙克善이 청도군수淸道郡守가 되어 가을에 군 안의 늙은이와 젊은이를 많이 모아놓고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서로 가르치는 조항을 강명하여 이륜彝倫을 권해 힘쓰게 하고, 스스로 시를 지어 권유하였다.[46]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흥감하는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당, 송, 명, 조선에서 모두 포함되었던 독약讀約 또는 독법讀法의 내용은 사라졌다.[47]

> 『오례의』에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과 집안에서 화목하고 향당에서 친목하는 훈교 등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옛날

46) 『牧民心書』 卷7, 禮典, 興學(『정본』 제28책, 265쪽).

47) 중국 당·송·명·청대에 시행된 향음주례와 독약·독법에 대해서는 박사랑, 앞의 논문, 2025, 24~49쪽 참조.

에는 이런 글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향음주례를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였을 뿐이고 말만으로 백성을 가르치려 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말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성인이 예를 만든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도 언급하지 않는다.[48]

향고례의 경우 다산이 새로 만든 의절이다. 왕사王事에 죽은 자의 자손이 고孤라는 해석이나 국사國事로 죽은 충신의 자손을 찾아 구휼한다는 대목을 보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49] 그러나 다산은 경전을 인용해 휼고恤孤의 의미가 "고아를 길러 백성을 대신해 선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했다.[50] 또 '위에서 고아를 구휼하면 백성이 배신하지 않는다(上恤孤而民不倍)'는 구절의 의미를 '윗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로 보았다.[51] 즉 죽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그 자식을 돌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왕의 휼고의 법은 일로 죽은 자의 고아를 공적으로 봉양한다. 범민의 고아는 백성에게 권하여 기르게 한다."라고도 했다.[52] 공적 의례를 통한 고아의 봉양은 제한적으로

48) 『牧民心書』 卷7, 禮典, 興學(『정본』 제28책, 262쪽). "五禮儀有忠國·孝親·閨門·鄕黨·胥訓·胥教諸語 在古無文 蓋以鄕飮酒者 使民觀感而已 非以口舌教之也. 教以口舌 非聖人制禮之本意 故今所不用."

49) 『牧民心書』 卷7, 禮典, 興學(『정본』 제28책, 267~268쪽). "所謂孤者 死於王事者之子姓也." "牧訪求本管 有忠臣死事者之子孫 雖無寸功 若倡義赴陣 死於矢石者 其子孫皆所當恤也."

50) 『牧民心書』 卷7, 禮典, 興學(『정본』 제28책, 267~268쪽). "韓詩外傳云 事老養孤 代民勸善."

51) 『大學公議』 3,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정본』 제28책, 262쪽). "民不倍者 不偕其故舊之死者也豈不偕其長上之謂乎?"

52) 『大學公議』 3,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정본』 제28책, 262쪽). "先王恤孤之法, 其死事者之孤, 公養之, 其凡民之孤, 勸民以養

실행되지만, 결국 강조하려는 것은 모든 고아를 대상으로 자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우애의 정신(悌)에 토대해 자선慈善으로까지 이어지게끔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예는 모두 지역민에게 상호 연대와 우애, 자애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의례이다. 이 예의 행례 장소는 모두 향교 명륜당이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행하는 예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도 참여하는 예였기에, 농사가 쉬는 철에 진행되었다. 양로례는 가을 추수 뒤에 추위가 오기 전에 거행했다. 향음주례는 『주례』에 있는 「당정黨正이 고을 학교(序)에서 행한 향음주례」와 마찬가지로 맹동孟冬(해가 바뀌는 때)에 설행했다.[53] 모두 농민이 농사를 쉬어서 틈틈이 가르칠 수 있는 때였다. 향고례는 중춘 즉 음력 2월에 거행되었다. 중춘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농민이 본격적으로 바빠져서 오로지 농사일에 전념해야 할 시기(동지 후 45일 이후)는 아니다. 궁핍한 고아들이 더 고달플 시기이기도 했다. 풍속을 바꾸는 교육의 정치를 천명했던 정조와 마찬가지로 다산은 목민관이 이러한 예를 학교에서 행하여 만민 교육의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2) 교법敎法으로서의 향약 인식과 향약례 제안

물론 목민관의 교민은 이상 세 가지의 향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가 소학, 오륜행실, 향약조례를 만민 교육의 이상과

之."

53) 『牧民心書』 권7, 禮典, 興學((『정본』 제6책, 124쪽). "季秋行養老之禮 敎以老老 孟冬行鄕飮之禮 敎以長長 仲春行饗孤之禮 敎以恤孤."

연결지었듯이 다산 역시 『목민심서』에서 공연과 같은 의례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울려 계발시티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제안했다.[54]

농사하는 틈틈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목민관의 의무로 말하면서 다산이 선택한 교육 제도는 향약이다. 『목민심서』에 나타난 향약에 대한 다산의 입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토호土豪와 향족鄕族이 향약을 빙자하여 향권을 멋대로 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거론한 비판적 입장이다. 보성군의 교파-약파 갈등, 율곡 이이의 향약시행 유보론 등을 들어 향약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 「남전여씨향약」을 활용해 만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매우 상반된 입장을 한 책 안에서 전개한 것이다. 다산의 향약에 대한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

일단 다산은 향약에 고례의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향약을 힘써 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힘써 행해야 할 향약의 면모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다산은 후대 향약의 유래를 한나라 때 태수를 맡았던 한연수가 마을에 오장伍長을 두어 효제로 백성을 이끌게 하고, 간인奸人이 끼어 살지 못하게 하고, 마을에 비상한 일이 생기면 번번이 보고하게 하여 관리가 형벌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례에서 찾았다. 마을을 작은 규모의 자치단위로 조직하고, 그 자치 단위 내에서 오장이 효제로 백성을 이끌고 간인이 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하여 다스림을 이루었다는 것

54) 『목민심서』의 「교민」에서 다산은 수령은 옛날의 제후와 같고, 그 직분은 오직 백성을 가르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예악형정 모두가 백성을 가르치는 문(제도)이었다. 이 글에서 예시한 여러 향례 뿐 아니라 향팔형 등 형벌, 정표 등 다방면의 제도도 포함된다. 다산은 형벌을 예교의 일환으로 여기고 18세기 말~19세기 전반기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선의 오래된 '덕주형보'의 형정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서는 김호,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2013; 김호, 「1부 조선 형정론의 전통과 '德主刑補'」,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2020 참조.

이다.

이어 정명도程明道가 진성령이 되었을 때의 행적을 제시했다. 백성을 만나면 효제충신의 도리로 깨우쳐주고, 마을에 작은 단위의 보오保伍를 조직해서 역역을 돕고 환난을 구제하고, 고아와 장애가 있어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친척이 구제하게 하고, 병이 든 나그네까지 돌보아 주게 한 일 등이다. 정명도는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며 제각각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쳤다. 이처럼 도리를 깨우쳐 가정을 책임지고, 이웃과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산이 생각하는 향약의 효용이었다.

「남전여씨향약」에서 내세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네 조목의 내용도 소개하고, 그 중 덕업상권의 주석을 『소학집해小學集解』를 통해 자세히 상고하도록 했다. 덕업을 권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이 향약의 핵심이라 본 것이다. 향약의 조직법이나 조직 내에서의 역할 배분, 선악적과 그에 따른 상벌의 실행 등을 담은, 이른바 「회집독약법會集讀約法」 등은 다루지 않았다. 즉 자치 조직법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지고 서로 연대하는 실천(덕업)을 가르치는 교법敎法으로서 향약을 제안한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 '주자권유방朱子勸諭榜'을 비롯 여러 목민관들의 교법이 담겨진 '권유문勸諭文'들도 교민에 적극 활용될 수 있었다.

> 같은 보(同保)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서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며, 친척 간에 화목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각각 본분에 따라 자기의 직책을 수행

하라. 나쁜 짓과 도둑질을 하거나 술 마시고 도박을 하거나 서로 다투어 남을 구타하거나 시비를 따지어 소송을 하거나 남을 침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속이지 말고 은인자중하여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라. 보保 안에 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이 있어 사적이 분명하면 사실을 갖추어 보고하라. 마땅히 조례條例에 따라 정표로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역시 갖추어 보고하면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이 밖에 금약禁約 사항은 이미 별도 시행하고 있으니, 각각 준수하여 법을 어기거나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55]

이 '주자권유방'에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타인을 돌보며 법률을 지키고 지방 정부의 상벌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산은 향약을 교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거나 역대의 좋은 선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현실에 맞는 교육용 향약 예제를 내놓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여씨향약·진씨향약陳氏鄕約 및 주자朱子의 권유문을 모방하고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중에서 특히 아름다운 행적 수십 조항을 뽑아 별도로 한 권의 책을 만든다. 언문諺文으로 단정히 써서 수십 본을 등사해 여러 고을에 반포한다.

② 여러 고을에서는 각각 자제 백여 명을 뽑아-큰 고을은 120명, 작은 고을은 80명- 별도로 명부를 만들고, 이들에게 반포한 책을 익히게 한다.

55) 『牧民心書』 권7, 禮典, 敎民(『정본』 제28책, 228쪽).

③ 입동立冬 이후 경칩驚蟄 이전 120일 동안, 매 10일마다 한 번씩 강講을 한다. 여러 향의 자제들이 들어와 강하고, 나아가서는 백성을 권유하게 한다.

④ 향약의 금계禁戒 조항인 다투고(분쟁紛爭) 소송하는(판송辦訟) 자가 있으면, 관에서 별도로 문서에 기록한다. 금계 조항을 범한 자가 많으면 그곳의 권유를 맡은 자제를 벌하고, 금계 조항을 범한 자가 적으면 자제를 격려하고 상을 주어 각자 떨쳐 일어나게 한다.

⑤ 관에서는 별도로 염탐하여 효자·순손과 돈목敦睦한 행실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상을 주고, 효제하지 않는 자와 완악한 자는 서둘러 제거하고 다스린다.

⑥ 이렇게 하면 화민성속에 도움이 있을 것이니, 결코 토호土豪와 간민奸民들이 함부로 향약의 권리를 잡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56]

이 향약 예제는 만민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로서의 의미가 잘 살아나게끔 설계되었다. 우선 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백성들을 가르칠 「향약문」을 새로 준비한다. 『향례합편』에는 「주자증손여씨향약문」만 수록했지만, 다산의 향약 예제에서는 위에서 본 주자 권유문을 더 중시했다.

56) 『牧民心書』 권7, 禮典, 敎民(『정본』 제28책, 232쪽). "今擬呂氏鄕約·陳氏鄕約及朱子〈榜諭文〉及《五倫行實》之中 抄取其美行數十條 別爲一冊 楷書土書_謂諺文 謄寫數十本 頒于諸鄕. 乃於諸鄕 各選子弟百餘人-大鄕百二十人 小鄕八十人 別爲名錄 使之肄習. 立冬以後驚蟄以前 共一百二十日 每十日一講 令數鄕子弟 入而應講 出而勸諭. 其有以鄕約中 禁戒之條 紛爭辨訟者 官自記之于簿曆 犯條者多 則罰責其子弟 犯條者寡 則獎諭論賞 使各興起. 官又別蹊廉訪 其孝子順孫 敦睦有行者 別加褒賞 其不孝不悌 頑黷稔惡者 亟行鋤治 庶乎有補於民俗. 斷不可使土豪 奸民 濫執鄕約之權也."

이를 모방해 앞부분에서 백성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공유해야 할 사회적 덕목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와 함께 실제 덕업을 실천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수록해서 「향약문」 책자를 만들도록 했다. 이 책은 언문으로 작성해서 범민의 접근가능성과 가독성을 높이도록 했다.[57]

이 책은 바로 모든 백성을 모아 놓고 읽는 것이 아니다. ②에서 보듯, 백성들 중에서 선발한 자제들을 우선 가르치도록 했다.[58] 생업에 종사해 전업 학생이 될 수 없는 이들 중에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이 범민의 교육을 위한 이른바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 수는 고을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이 자제들이 우선 언문으로 등사·배포된 책을 익히고, 전혀 배우지 못한 글 모르는 백성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도록 했다.

③에서는 이 선발 자제들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설명하였다. 이 선발 자제들 역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농사를 쉬는 때인 입동에서 경칩사이의 기간에 자제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관에서는 열흘에 한 번씩 강독회를 열고, 선발된 자제들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익히게 한다. 이런 교육은 관의 의무이며, 교육을 받은 자제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받은 내용들을 '권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④에서 설명하듯, 향약의 상벌 조항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직접

57) 다산은 정조 말년 간행된 『오륜행실도』를 추가 배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언문으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그림까지 있는 『오륜행실도』를 요순시대 상형문자로 가르쳤던 일과 비교했다. 고을 가호의 수를 계산해서 100호마다 책 한권씩을 나누어 주고 만민 교육에 활용하고자 했다. 『牧民心書』 권7, 禮典, 敎民(『정본』 제28책, 232쪽)

58) 백성들에게 덕행을 권유하는 교사를 자제 중에서 뽑아 교육하고 그 업적을 고과하는 것은 『경세유표』 교민지법에서 밝힌 바 '군현에서 교장 3인 세워 만민을 교육하고, 그 업적에 따라 선사로 선발하는 제도'와 유사하다. 『주례』의 예제를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制禮 취지를 지금 현실에서 최대한 구현하려던 것이 『목민심서』 문제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 향약에서 '선악적'을 만들었듯이 장부를 만들어 선행이나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록하도록 했는데, 선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르친 자제에게 상을 내려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악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역시 가르친 자제에게 벌을 내린다. 즉 만민교육의 역할을 맡은 현장 교사들의 업적 평가제도를 마련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⑤ 관에서는 상벌의 권한을 갖고 직접 만민의 선행과 악행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단계를 정하고 역할을 나누어 향약으로서 만민을 가르치는 이유는 목민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민 즉 백성들을 가르쳐 서로 친하게(民親)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것을 우선하고 상벌을 뒤로 하는 예치의 원칙을 다시 환기하고, 상벌의 권한을 아래에 넘겨 상벌을 불공정하게 남발하여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 했다.(⑥)

4. 맺음말

이상에서 다산 정약용의 향례 기획을 '만민 교육' 의제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산의 『대학』 해석을 검토해 태학太學-주자胄子 교육론과 친민설親民說의 경세적 의미를 확인했다. 다산은 태학-주자교육론, 친민설 등을 주장해 주자학의 해석을 일부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주자학의 만민교육론을 부정하려던 것이기 보다는, 치국평천하를 위해 국가·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것이었다. 적극적 교육 정책을 통해 무너져가는 조선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른바 '교육입국론'을 염두에 둔 밑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범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지역에서의 교육론을 검토하기 위해 다산의 향수론鄕遂論을 검토하였다. 다산은 향수론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지역을 대사도의 교육 공간으로 설정한다.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농맹農甿을 포함한 만민을 모두 대사도의 교육 대상으로 보았고, 대사도의 위임을 받은 여러 직제의 관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 대상인 만민은 전업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와 본업을 쉬는 때에 교육을 받는 농민으로 구분되었다. 다산은 농맹들에게도 농사 기술 교육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도덕 주체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정조가 『향례합편』에서 제안한 향례, 향음주례와 향약을 중심으로 한 만민 교육 의제를 다산의 『목민심서』가 수용한 방식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대에 대사도의 만민 교육을 보여주는 예제인 향례는 조선의 실상에 맞는 향례로 재편되어 『목민심서』 예전 교민에 수록되었다. 만민 교육의 향례로 다산은 양로례, 향음주례, 향고례를 제안했다. 세 가지 예는 모두 지역민에게 상호 연대와 우애, 자애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의례이다. 이 예의 행례 장소는 모두 향교 명륜당이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행하는 예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배려해, 농사가 쉬는 철에 진행되었다. 농사하는 틈틈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목민관의 의무로 말하면서 다산이 선택한 교육 제도는 향약이었다. 다산은 자치 조직법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지고 서로 연대하는 실천(덕업)을 가르치는 교법敎法으로서 효용을 인정했다. 향약을 교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역대의 좋은 선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산은 모든 조선 백성들이 도덕주체로 거듭나게 할 실제의 방법을 제안했다. 언문으로 된 「향약문」에는 각 생활 주체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윤리적·사회적 덕목들과 이를 직접 실천했던 민간 영

웅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백성들 사이에서 선발된 자제들이 우선 언문을 배우고 「향약문」을 강독해 내용을 잘 익힌 후, 현장 교사가 되어 이웃의 사람들에게 떳떳한 삶의 도리를 가르쳤다. 한차례의 공연과도 같은 이벤트(의례)를 통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그림과 생생한 이야기를 동원해 생업 틈틈이 가르치게 되면,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산의 향례를 통한 만민 교육 기획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실천할 수 없었지만, 그의 경세서에 담겨져 미래에 전달되었다. 근대 개혁기에 추구되었던 '국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와 같은 오랜 조선의 이상과 여러 만민 교육 경세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계기적으로 살필 수 있길 기대해본다.

(논문투고일 2025년 3월 9일, 심사확정일 2025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8일)

참고문헌

원전

定本『與猶堂全書』(2004, 다산학술문화재단)

『國朝五禮儀』

『牧民心書』

『經世遺表』

『鄕禮合編』

단행본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역,『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김지영,『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김호,『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2013.

____,『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2020.

송재소·이봉규·김태영·안병직·조성을,『다산 정약용 연구』, 사람의무늬, 2012.

위잉스, 이원석 역,『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우,『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차이진펑, 김중섭·김호 역,『다산의 사서학』, 너머북스, 2014.

피터볼, 김영민 역,『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피터볼, 심의용 역,『중국 지식인들의 정체성 -사문을 통해 본 당송시대

지성사의 대변화』, 북스토리, 2008.

논문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향례 이해」, 『한국실학연구』 31, 2016.

_____, 「정약용과 신작의 육향제 이해」, 『한국학보』 61, 1990.

김선경, 「다산 정약용의 정치철학; 『대학공의』 읽기」, 『한국사상사학』 26, 2006.

김지영, 「경쟁하는 두 왕조 -조선 국왕의 개성 행차의례와 '문명지치'의 약속」, 『서울학연구』136, 2020.

_____, 「영조대 만민 교육 이념의 실천과 동몽의례」, 『한국학연구』 74, 2024.

_____, 「조선시대 국가향례의주의 예교론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박사랑, 「조선시대 향례 논의와 실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백민정, 「주례 육향제 논의를 통해 본 다산의 경세적 구상 -향삼물 향팔형의 교화정책을 중심으로」, 『다산학』 2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山內弘一, 「경성 귀족으로서의 긍지」, 『다산학』 1, 다산학술문화재단, 2000.

이윤, 「1797년 『五倫行實圖』의 편찬과 正祖의 矯俗 정책」, 『규장각』 64, 2024.

국문요약

다산 정약용의 향례 기획을 '만민 교육' 의제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첫째, 다산은 『대학』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치국평천하를 위해 국가·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예악형정을 활용한 적극적 교육을 통해 민 대다수의 역량을 강화할 때, 무너져가는 조선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여겼다. 둘째, 다산은 향수론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지역을 대사도大司徒의 교육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대상인 만민은 전업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와 본업을 쉬는 때에 교육을 받는 농민으로 구분되었다. 다산은 농민들에게도 농사 기술 교육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도덕 주체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정조가 집권 후기 던진 향례를 통한 만민 교육 이라는 의제에 다산이 어떻게 답했는지 살펴보았다. 만민 교육의 향례로 다산은 양로례, 향음주례, 향고례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상호 연대와 우애, 자애의 마음을 길러주고자 했다. 이들 향례는 학교에서 실행되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배려해, 농사가 쉬는 철에 진행되었다. 농사하는 틈틈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목민관의 의무로 여긴 다산은 향약을 교육용예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선발된 자제들이 농한기에 언문을 배우고 「향약문」을 강독해 내용을 잘 익힌 후, 이웃의 사람들에게 떳떳한 삶의 도리를 가르치게 했다. 다산의 향례를 통한 만민 교육 기획은 그의 경세서에 담겨져 미래에 전달되었다. 근대 개혁기에 추구되었

던 '국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와 같은 오랜 조선의 이상과 여러 만민 교육 경세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계기적으로 살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만민 교육, 대학大學, 향수鄕遂, 향례鄕禮, 향약鄕約.

Abstract

Institutionalizing Universal Education
: Tasan Jeong Yak-yong's Blueprint for Inclusive Moral Education through Local Ritual Practices

Kim Ji-young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

This study examines Tasan Jeong Yak-yong's design of local rituals(鄕禮) in connection with the agenda of "education for all." First, through a novel interpretation of *The Great Learning*(『大學』), Tasan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ctive, state-led education policies as a means to achieve good governance and peace under heaven(治國平天下). He believed that by enhancing the capacities of the broader populace through moral, legal, and ritual educ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restore the collapsing foundations of the Joseon dynasty. Second, Tasan envisioned all regions of Joseon educational spaces under the oversight of the Great Instructor(大司徒). For Tasan, it was essential to provide farmers not only with agricultural training but also with moral education that cultivated their roles as ethical agents within families and communities. Third, the study explores

Tasan's response to King Jeongjo's initiative to use local rituals as a tool for mass education. Tasan proposed three key rituals, which aimed to nurture solidarity, fraternity, and compassion among local residents. He considered it a local administrator's duty to educate the people in the midst of their daily lives.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he ideals of universal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resonated with later efforts at national education in Korea's modern reform era.

Key Words | Jeong Yak-yong, universal education, *Great Learning* (『大學』), local rituals(鄕禮), Hyangyak(鄕約).